

| 2020년 7월

제 04호

인터넷 산업 트렌드 리포트

정보를 바탕으로 통찰을 공유하는, 인터넷기업협회 트렌드 리포트

AI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

A - E - C 로 알아보는 인공지능 산업

(Around) (Enlarge) (Change)

01.7월 트렌드 키워드

인터넷 산업 7월 이슈 종합

I 키워드 : AI(Artificial Intelligence)

- IT 산업 전반에 AI 활용에 대한 니즈 및 활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업 내 AI 활용, 관련 서비스에 대해 매체 주목도가 높아짐
-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가 매체에 언급되면서 관련성이 높은 AI 이슈 역시 지속적으로 환기, 노출

I (Around) AI 기술, 전방위적으로 활용 中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
- 포털사이트 댓글 관련 인공지능 필터링, AI 스마트 스피커, 이커머스 플랫폼 챗봇 활용 등 AI 기술 바탕 문제 해결 및 고객 서비스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 정착에 따른 AI 기술 수요 및 활용 증가

I (Enlarge) AI 기반 비즈니스 영역 무한 확대

- AI 기반 신규 IT 사업 영역 지속적으로 확대
- 번역, 이미지, 질병진단, 음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활성화 진행
- 글로벌 기준, 인공지능 세계 100대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모는 101억 달러

* CBInsight, 2019

I (Change) AI로 인한 국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예상

- AI 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 확대, AI 접촉으로 인한 국민 생활 변화 진행 中
- 자동차/의료/검색/금융 등 국민 일상에 영향력이 높은 분야에서 AI 서비스 상용화 진행, 이로 인해 생활 속 변화 체감 예상

〈7월 키워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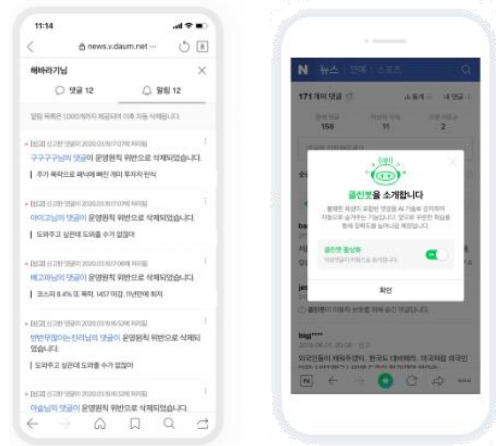


- 7월1일부터 7월23일까지 포털/IT 전문매체 산업 관련 주요 기사 약 112건
-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
-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중 산업 관련도를 종합하여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

02.7월 트렌드 포커스

IT 산업 전반에서 AI 기술을 적용, 문제 해결 및 편의 제공 도모

기존 IT 산업에서 AI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영역 확장 및 문제 해결 도모

AI를 통한 문제해결
(포털) 뉴스채널 악성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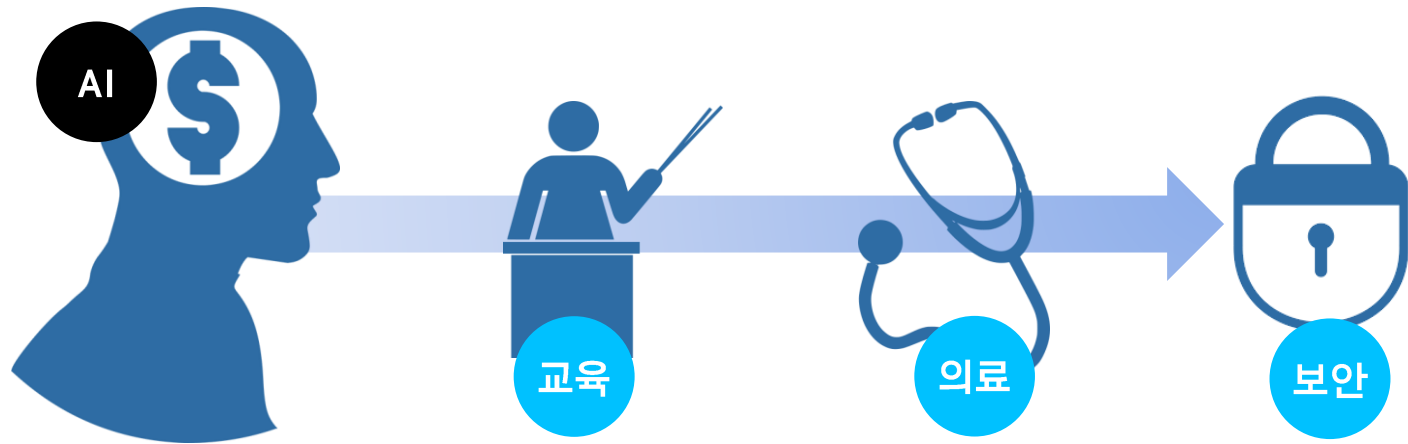
- 카카오, AI 활용 댓글 및 비속어 필터링
: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 음표 모양(ㅏ)으로 치환, 욕설/비속어 20%감소
- 네이버, 클린봇 운영
: 기술고도화를 통해 문장의 맥락을 탐지, 모욕적인 표현을 걸러낼 수 있도록 기능 개선

AI를 통한 서비스 개선
(이커머스) 물류 혁신 및 제품 큐레이션

- 쿠팡, AI 활용 당일배송 서비스 제공
: 고객 주문 패턴 분석, 당일 입/출고 가능
- 네이버쇼핑, 상품추천 시스템(AITEMS) 적용
: 인공지능 상품 추천 시스템 적용
: 개인 맞춤 쇼핑 제공을 통해 적용 이전 대비 거래액 2배 증가

AI 기술 활용, 전 산업 분야에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성장 지속

IT산업을 포함하여 교육, 의료 등 기존의 전통적 산업까지 AI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생성, 진출

CASE1. 퀴이드
교육

- 에듀테크 기업 퀴이드(한국) / 개인별 맞춤형 문제와 강의 콘텐츠를 제공
- 인공지능이 대량의 문제 풀이 결과 데이터를 학습, 점수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튜터 서비스 제공
- 산타토익의 경우, 실시간 진단 및 사용자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정답률 예측 서비스

CASE2. Vuno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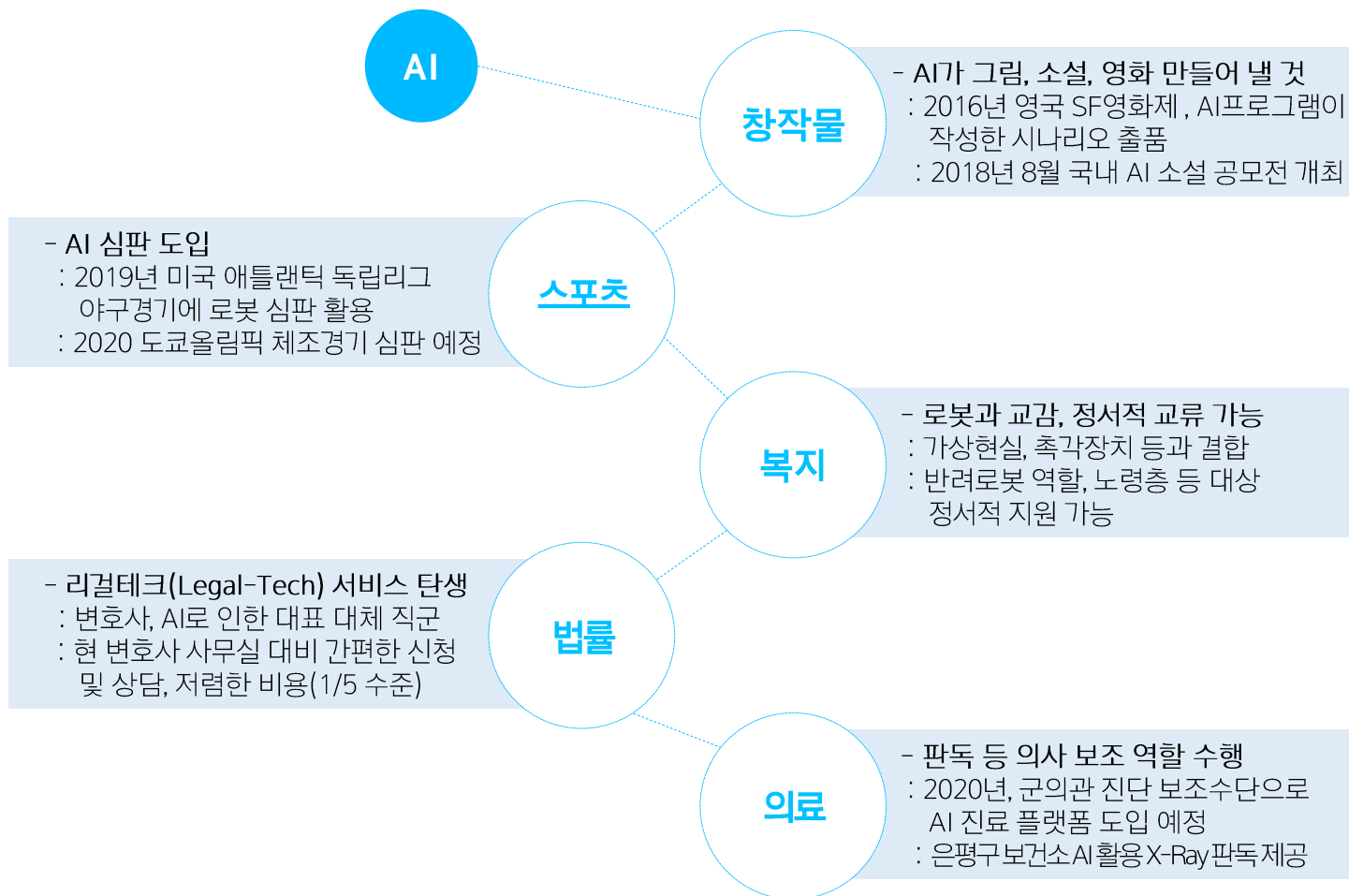
- AI 기반 의료 제품 비즈니스 모델(한국)
- 대표 서비스 : 인공지능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뷰노메드 본에이지'
- X-ray 사진학습으로 골연령 측정, 흉부질환 판독 / 안구 영상 분석으로 병변 판독 등

CASE3. face++
보안

- 대표적인 안면인식 기업(중국)
-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 / 안면인식, 안면비교, 안면 검색 및 어트리뷰트(얼굴에서 성별, 나이 등 개개인 고유 속성 분석) 기능까지 가능

AI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 시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 수반 예상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AI서비스 또는 AI가 생산한 결과물과 접촉, 생활 전반에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결론

인터넷 기반 산업에서 AI 기술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었을 때 더 유효하며 AI 기반 서비스가 전통적 산업까지 확장되고 창작물 영역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확장 고려

1

V 서비스 접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AI 서비스 적극 활용 필요

- | 사용자의 불편함 또는 서비스 관련 네거티브를(예:뉴스 악플) 해소하는 차원의 AI 서비스 활용 도모
- | AI 기술(High-tech)을 사용자 문제 해결에 활용하여 기술 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이미지 동시 구축 고려

2

V AI기반 산업과 연계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고려

- | 기존의 전통적 산업(예: 교육, 의료 등)이 AI로 인해 IT 산업으로 편입,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능
- |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AI 기업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 영역 확장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AI 기술 기반 기업과 동반성장 가능

3

V AI 기반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진출-확장 가능성 존재

- | AI를 활용한 창작물 개발의 지속적 시도, 결과물 산출 확인 / AI 바탕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
- | 콘텐츠 산업의 바탕인 지식재산권(IP)의 지속적 개발이 AI를 통해 가능하므로 IP DB 구축 차원의 비즈니스 확장, 진출 고려

03.7월 정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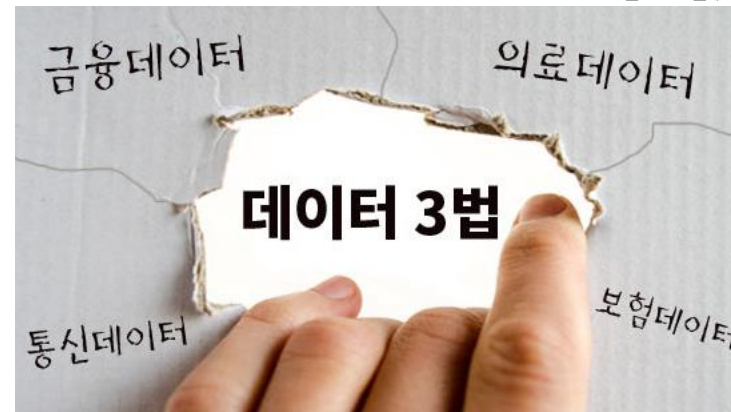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수정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 정부, '데이터 3법' 관련 대표 독소조항으로 언급된 개보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 재입법 예고
- (핵심 수정 내용) 모호한 표현 완화 및 가명정보 반출 승인이 용이하게 변경

①14조 2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29조 2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을 다시 알아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1)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규정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관련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 보조 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2)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 규정
 - : 웹하드 사업자와 /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 3)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 규정
 - : 상시적 신고 기능 마련, 금치어/연관검색어 제한 등, 필터링 조치, 불법촬영물 게재 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 고지 조치 등
 - :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
 - 4)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의 요청 규정 마련
 - :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
 - 5) 인터넷 사업자 관련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 신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1)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 2)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

